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196
----------	-----------

제안연월일 : 2018년 12월 17일

제안자 : 교육위원장

1. 수정이유

- 행정재산의 용도 변경 및 폐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1조와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반드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므로 이를 생략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공유재산심의회의 서면 심의 규정을 조문의 형식적 측면에 맞춰 정비함.

2. 주요내용

- 가. 행정재산의 용도 변경 및 폐지의 경우에는 반드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함(안 제5조제3항)
- 나. 공유재산심의회의 서면 심의 규정을 새로운 항을 신설하여 규정함(안 제6조제8항).

3. 참고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5조제3항에 다음과 같이 단서를 신설하고, 제4호를 삭제함.

다만 행정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안 제6조제7항 중 단서를 삭제하고,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함.

제8항 위원장은 재해 등 긴급한 사유로 심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수정안 대비표

현 행	조 례 안	수 정 안
<p>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생략)</p> <p>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p>1. ~ 4. (생략)</p> <p>5. <u>영 제9조제10호</u>에 따른 복합시설의 설치</p> <p>6. ~ 10. (생략)</p> <p>③ 제2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p> <p>1. ~ 2. (생략)</p> <p>3. 대장가액 <u>5억 원</u> 이하 공유재산의 취득·처분</p> <p>4. 다음 각 목의 행정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다만, 해당 토지 위에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물을 포함한다.</p> <p>가. <u>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에 있는 33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u> 또</p>	<p>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현행과 같음)</p> <p>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p>1. ~ 4. (현행과 같음)</p> <p>5. <u>영 제9조제1항제10호</u>에 따른 복합시설의 설치</p> <p>6. ~ 10. (현행과 같음)</p> <p>③ 제2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단서 신설></p> <p>1. ~ 2. (현행과 같음)</p> <p>3. 대장가액 <u>5억원</u> 이하 공유재산의 취득·처분</p> <p>4. <u>다음 각 목의 행정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다만, 해당 토지 위에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물을 포함한다.</u></p> <p>가. (현행과 같음)</p>	<p>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조례안과 같음)</p> <p>② (조례안과 같음)</p> <p>1. ~ 4. (조례안과 같음)</p> <p>5. (조례안과 같음)</p> <p>6. ~ 10. (조례안과 같음)</p> <p>③ 제2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u>다만 행정재산에 대한 용도 변경 또는 용도 폐지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u></p> <p>1. ~ 2.(조례안과 같음)</p> <p>3. (조례안과 같음)</p> <p><삭 제></p> <p><삭 제></p>

현행	조례안	수정안
<p><u>는 건물</u> <u>나. 시 지역에 있는 660</u> <u>제곱미터 이하의 토지</u> <u>또는 건물</u> <u>다. 군 지역에 있는 990</u> <u>제곱미터 이하의 토</u> <u>지 또는 건물</u> <u><신 설></u></p> <p>5. (생략)</p>	<p><u>나. (현행과 같음)</u></p> <p><u>다. (현행과 같음)</u></p> <p><u>라. 토지 또는 건물 외</u> <u>대장가격 5천만원 이</u> <u>하의 재산</u></p> <p>5. (현행과 같음)</p>	<p><u><삭 제></u></p> <p><u><삭 제></u></p> <p><u><삭 제></u></p>
<p>제6조(심의회회의 구성·운영) ①~⑥ (생략)</p> <p>⑦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u><단서 신설></u></p>	<p>제6조(심의회회의 구성·운영) ①~⑥ (현행과 같음)</p> <p>⑦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u>다만, 위원장은 재해 등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u></p> <p><u><신 설></u></p>	<p>제6조(심의회회의 구성·운영) ①~⑥ (조례안과 같음)</p> <p>⑦ <u>(현행과 같음)</u></p> <p>⑧ <u>위원장은 재해 등 긴급한 사유로 심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u></p>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5호 중 “영 제9조제10호” 를 “영 제9조제1항제10호”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다음과 같이 단서를 신설한다.

다만 행정재산에 대한 용도 변경 또는 용도 폐지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또한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5억 원” 을 “5억원” 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제6조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위원장은 재해 등 긴급한 사유로 심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제2장에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입목·죽 처분)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목·죽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재해 등으로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조달청 가격정보를 기준으로 1주당 200만원 이상인 입목·죽
2. 문화적, 역사적, 상징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입목·죽

제21조 중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료의 요율 및 조정” 을 “사용료의 요율” 로, “제23조, 제26조(제8항을 제외한다), 제27조, 제29조, 제30조 및 제31조를” 을 “일반재산 대부 규정을” 로 한다.

제29조제4항 본문 중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을

“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 으로 한다.

제34조제1항제3호 중 “2012년 12월 31일 이전” 을 “2012년 12월 31일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적용기간을 말함) 이전” 으로 한다.

제4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2(준용) 공유재산의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을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생 략)</p> <p>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p> <p>1. ~ 4. (생 략)</p> <p>5. <u>영 제9조제10호</u>에 따른 복합시설의 설치</p> <p>6. ~ 10. (생 략)</p> <p>③ 제2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단서 신설></p> <p>1. · 2. (생 략)</p> <p>3. 대장가액 <u>5억 원</u> 이하 공유재산의 취득·처분</p> <p>4. <u>다음 각 목의 행정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다만, 해당 토지 위에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물을 포함한다.</u></p> <p>가. <u>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에 있는 33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또는 건물</u></p> <p>나. <u>시 지역에 있는 66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또는 건물</u></p> <p>다. <u>군 지역에 있는 99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또는 건물</u></p> <p>5. (생 략)</p>	<p>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현행과 같음)</p> <p>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p> <p>1. ~ 4. (현행과 같음)</p> <p>5. <u>영 제9조제1항제10호</u>에 따른 복합시설의 설치</p> <p>6. ~ 10. (현행과 같음)</p> <p>③ 제2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u>다만 행정재산에 대한 용도 변경 또는 용도 폐지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u></p> <p>1. · 2. (현행과 같음)</p> <p>3. 대장가액 <u>5억원</u> 이하 공유재산의 취득·처분</p> <p>4. <삭 제></p> <p>5. (현행과 같음)</p>
<p>제6조(심의회의 구성·운영) ①~⑦ (생 략)</p>	<p>제6조(심의회의 구성·운영) ①~⑦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 align="center"><u><신 설></u></p>	<p>⑧ 위원장은 재해 등 긴급한 사유로 심의 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 되는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p>
<p align="center"><u><신 설></u></p>	<p>제15조의2(입목·죽 처분)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목·죽 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재해 등으로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조달청 가격정보를 기준으로 1주당 200만원 이상인 입목·죽 2. 문화적, 역사적, 상징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입목·죽
<p>제21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u>행정재산에 대한 사용료의 요율 및 조정</u>, 전세금의 평가 등 그 밖의 사용·수익허가에 대한 사항은 <u>제23조, 제26조(제8항을 제외한다), 제27조, 제29조, 제30조 및 제31조</u>를 준용한다.</p>	<p>제21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u>사용료의 요율</u>, 전세금의 평가 등 그 밖의 사용·수익허가에 대한 사항은 <u>일반재산 대부 규정을</u> 준용한다.</p>
<p>제29조(전세금 납부방법의 대부) ① ~ ③ (생략)</p> <p>④ 제3항에 따라 징수한 전세금은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에 따른 세입세출외현금 중 보증금으로 관리한다. 다만, 전세금의 이자수입은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수입으로 한다.</p> <p>⑤·⑥ (생략)</p>	<p>제29조(전세금 납부방법의 대부)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제3항에 따라 징수한 전세금은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에 따른 세입세출외현금 중 보증금으로 관리한다. 다만, 전세금의 이자수입은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수입으로 한다.</p> <p>⑤·⑥ (현행과 같음)</p>
<p>제34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①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p> <p>1. 2. (생략)</p>	<p>제34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①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p> <p>1. 2.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3. <u>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u> 교육감 소유가 아닌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를 그 건물의 1층 바닥면적(둘 이상으로 구분소유된 집합건물인 경우에는 소유자별 바닥면적)의 두 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p> <p>4. · 5. (생략)</p> <p>② (생략)</p>	<p>3. <u>2012년 12월 31일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적용기간을 말함) 이전부터</u> 교육감 소유가 아닌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를 그 건물의 1층 바닥면적(둘 이상으로 구분소유된 집합건물인 경우에는 소유자별 바닥면적)의 두 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p> <p>4. · 5.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u><신 설></u></p>	<p><u>제46조의2(준용) 공유재산의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을 준용한다</u></p>